



사건번호 | 중재 제12111-0078호

구 분	내 용
신 청 원 인	공사(잔)대금
신 청 금 액	KRW 42,709,402
판 정 금 액	KRW 0 (인용률: 00.00%)
비 용 부 담	신청인 부담
처 리 기 간	84일
종 류	민간
중 재 판 정 부	1인 (법조계)
핵 심 단 어	부가가치세, 제세공과금

판정요지

- [1] 도급계약 체결 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제출한 견적서에 “부가가치세 별도”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과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
- [2] 도급계약에서 “설계비, 전기계량기, 외부상수도공사비등, 인입비, 심야전기보일러 한전납입금, 제세금”을 도급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때, 위 “제세금”에 수급인에게 부과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

판정요약

1. 사실관계

- 신청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, 2006. 1. 20. 피신청인으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.
- 신청인은 위 공사대금에 대한 10%의 부가가치세를 신고·납부하지 않았으며, 해당 세무서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합계 금 42,709,402 원을 부과하였다.
- 위 계약서에는 공사금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기재되지 않았으나 공사비 범위란에 “설계비, 전기계량기, 외부상수도공사비등, 인입비, 심야전기보일러 한전납입금, 제세금” 등 기타 부대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, 한편 신청인이 계약체결 전 그 운영의 별도 법인 명의로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견적서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다.

2. 주장

-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해당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되어 있으니 위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.
- 피신청인은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.

3. 판단

-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중 공사금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, “제세금”과 바로 앞에 열거된 비용들의 명칭·금액과 비교해 볼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며, 견적서에 “부가가치세 별도”라는 기재가 있지만 이는 그 견적서를 보고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, 이들 사정만으로 신청인 주장의 부가가치세 부담약정을 인정하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.

 판정전문

판정주문

1. 신청인의 중재신청을 기각한다.
2. 중재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.

신청 취지

1.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2,709,4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. 3. 26.부터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.

판정 이유

1. 인정사실

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각 증거와 심리과정에 나타난 양 당사자의 진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- 가. 주택건설·분양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은 2006. 1. 20. 피신청인으로부터 A 지역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금 390,000,000원에 수급하여 2006. 7.경 완료하고, 2006. 10. 16.까지 금 6,000,000원이 감액된 공사대금 금 384,000,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.
- 나. 신청인은 위 공사대금 390,000,000원에 대한 10%의 부가가치세 39,000,000원을 신고·납부하지 않았다가, 2009. 1. 2.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합계 금 42,709,402원을 부과 당하자 2009. 8. 13. 내용증명을 보내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하였다.
- 다.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금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, 제8조 공사비 범위란에 “설계비, 전기계량기, 외부상수도

공사비등, 인입비, 심야전기보일러 한전납입금, 제세금 등 기타 부대비용은 “갑”이 부담한다.”라고 되어 있으며, 도급계약 이전에 신청인이 그 운영의 별도 법인 신청외 갑 명의로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견적서에는 “P.S) 1. 부가가치세 별도, 2. 심야보일러 한전불입금 별도(₩6,526,000), 3. 인입비용(전기, 수도) 별도”라고 기재되어 있다.

2.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

- 가.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는 피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되어 있으니 피신청인은 위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상당액 금 42,709,402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.
- 나.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지만, 그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고, 다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(대법원 2002. 11. 22. 선고 2002다38828 판결).
- 다. 그러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의 약정이 있는지를 살펴보면,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중 공사금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, 공사도급계약서 제9조에서 말하는 “제세금”에는 바로 앞에 열거된 비용들의 명칭·금액과 비교해 볼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며, 견적서에 “부가가치세 별도”라는 기재가 있지만 이는 그 견적서를 보고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, 이들 사정만으로 신청인 주장의 부가가치세 부담약정을 인정하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.

3. 결론

따라서 신청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며 중재비용은 중재규칙 제 52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.